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04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이강일 · 강준현 · 김남근
김남희 · 김문수 · 김우영
김주영 · 김현정 · 민병덕
박상혁 · 박정현 · 백혜련
송재봉 · 이용우 · 허성무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 정도 “통제”하는 것을 두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해당하여야 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됨.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가맹사업 정의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통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다른 요건(영업표지 사용, 교육·지원, 가맹금 수수 등)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통제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형태의 사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기대하고 가맹금을 지급하더라도 분쟁 시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리형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관리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의2. “관리형 가맹본부”라 함은 관리형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관리형 가맹본부에 대한 일부 규정의 적용) 제5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의2, 제33조부터 제35조, 제37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은 관리형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관리형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관리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u>
2. (생 략) <u><신 설></u>	2. (현행과 같음) <u>2의2. “관리형 가맹본부”라 함은 관리형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u>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3조의2(관리형 가맹본부에 대한 일부 규정의 적용) 제5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의2, 제33조부터 제35조, 제37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은 관리형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u>
--------------------	---